

## □ 철도설계기준 개정(안) 신.구문 비교표

### ○ 철도설계기준(노반편) 제13장 정거장

현 행	개 정(안)
13.4.2 여객통로	13.4.2 여객통로
(6)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위치 (신설)	(6)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위치  ① 각 방향에 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계단위치를 결정한다. ② 외부계단은 기준의 보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녹지 및 공원 등에 설치하며,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. ③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보자선을 조정하거나 보도법면을 조정하여 잔여 보행폭을 확보한다.
(7)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설치 개소 (신설)	(7)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설치 개소  ① 정거장의 입구조간, 주변역세권, 승객접근의 용이성, 피난대체, 도로여건, 승객동선의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소를 정한다. ② 역사의 첨두시 승·하차 인원 및 계단통로 폭, 긴급 대피시간, 인근 도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역별 2개소 이상 설치하며, 출입구 최소폭은 3m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2m 이상으로 한다. 단, E/S와 병행시에는 계단폭은 1.5m 이상으로 한다. ③ 환승역의 경우와 같이 여객 동선이 복잡하거나, 주변여건상 불가피하게 출입구 개소를 증감하는 경우에는 정거장의 입구조간, 주변 역세권, 승객·접근의 용이성, 피난대체, 승객 동선의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○ 철도설계편법(노반편) 제11장 정거장

현 행	개 정(안)
<p>11.3 정거장 시설계획 11.3.7 정거장의 주요점토 사항</p> <p>(3) 지하정거장 (소설)</p> <p>11.3 정거장 시설계획 11.3.7 정거장의 주요점토 사항</p> <p>(3) 지하정거장</p> <p>(⑦ 외부출입구 위치는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출입구 개소 제한에 따른 우선순위 및 기준의 보도폭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입구 위치 결정시 우선 순위는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, 학교 및 병원 등 공공시설 지역, 상가 및 빌딩 순으로 정하며,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</li> <li>- 외부 계단은 기존의 보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높지 및 공원 등에 설치하며,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.</li> <li>-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보차선을 조정하거나, 도로변면을 조정하여 잔여 보행폭을 확보한다.</li> <li>- 보도상의 잔여 보행폭이 1.5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 조정, 건물의 후퇴선 활용, 인접한 대형건물의 출구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사유지를 점용하여 보도폭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.</li> </ul>	

## 현 헤

## 개 정(안)

- 11.3 정거장 시설계획
- 11.3.7 정거장의 주요검토 사항
- (3) 지하정거장 (소설)
- ⑧ 외부 출입구 설치개소는 역사의 첨두 시승·하차 인원 및 계단통로 폭, 인근도로 형태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    - 출입구 수는 도시철도정거장설계지침에서 정하는 계단 필요폭 산정식에 따른 첨두시승·하차 인원을 감안하여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하며, 계단폭은 3m이상이며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    - 출입구개소 = 계단필요폭 × 도로형태별 가중치 ÷ 3
    - 계단필요폭 = 평균첨두 분당통행량 / 35
  - 인근도로 형태에 따른 가중치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출입구 설치개소에 오거리 2.5, 사거리 2, 삼거리 1.5, 일자형 1를 곱하여 출입구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다만, 환승역과 같이 여객 동선이 복잡하거나, 인접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출입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, 역사 지하설도가 깊은 경우 등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출입구 개소를 증·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편리성,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관련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